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업무 명령(알림)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과 관련하여 우리 처는 아래 한약재에 대한 잠정 수입, 제조, 판매 및 사용 금지를 명령하니 별도 명령전까지 동 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품목 : 야명사

○ 관련 법령 : 「약사법」 제62조 및 제71조 제2항

○ 조치내용 : 수입, 제조, 판매 및 사용 금지(별도 명령시까지)

* 참고사항 : 최근 5년간 한약재 '야명사'의 수입·생산 실적은 없음.

2. 아울러 관련 협회, 지방청, 검사기관에는 동 조치에 대하여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한약정책과장

수신자 해당 한약재 제조업체, 한약재 품질검사기관, 관련 협회, 세종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약품안전관리과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안전과장), 강원도청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안전과장),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안전과장),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안전과장),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안전과장), 보건복지부장관(한의약정책과장), 보건복지부장관(한의약산업과장), 관세청장(수출입물류과장)

사무관

최주영

한약정책과장

전결 2020.2.7.

고호연

협조자

시행 한약정책과-583

(2020. 2. 7.)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3354

팩스번호 043-719-3350

/ tea948@korea.kr

/ 비공개(5)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